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김지만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23. 08. 25.

발의의원 : 김지만, 류중우,
박종필, 이성오,
이재화, 임인환,
전경원, 정일균,
조경구, 하중환,
허시영 의원
(11명)

1. 제정 이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4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8월 26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2024년부터 공항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임.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군 공항과 민간공항을 동시에 건설하는 특수한 사례이며 군 공항은 기부대양여, 민간공항은 국가재정으로 추진됨. 본 조례에 따른 기금은 기부대양여로 추진되는 군 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관리가 목적임.

공항건설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며 다양하고 예측이 어려운 세입·세출 소요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일반회계 방식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정 운용의 탄력성이 높은 기금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2. 주요 내용

가. 기금의 설치목적 및 계정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4조)

나. 기금계정별 기금 조성 및 용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다. 기금의 관리·운용 및 계획·결산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1조)

마. 관계규정 준용(안 제12조)

바. 기금의 존속기한(안 제13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나. 예산 조치 : 관계부서와 협의 필요

다. 기 타 : 해당 사항 없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개발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공항 이전사업”(이하 “이전사업”이라 한다)이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을 말한다.
2. “종전부지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라 군 공항과 대구국제공항이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부지를 활용하여 관광·상업시설, 산업단지 등을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특별법 제2조제8호에 따라 통합신공항이 건설되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및 경상북도 의성군 지역에 대해 국방부장관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군 공항 이전사업 대행자”(이하 “이전사업대행자”라 한다)란 특별법 제8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대구광역시가 지정한 사업대행자를 말한다.
5. “종전부지 개발사업 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란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밖의 용어의 뜻은 특별법에 따른다.

제3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계정의 구분) 기금은 군 공항 이전계정 및 종전부지 개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관리한다.

제5조(기금의 조성) ① 군 공항 이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국가보조금”이라 한다)
2. 특별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이하 “국가지원금”이라 한다)
3. 이전사업 또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집행하는 비용으로 이전사업대행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4. 이전사업 또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선지급한 비용으로 이전사업대행자로부터의 회수금
5.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예수금”이라 한다)
7.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8. 그 밖의 재원

② 종전부지개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집행하는 비용으로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예수금
4.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그 밖의 재원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군 공항 이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이전사업대행자에게 지급하는 국가보조금
2. 이전사업대행자에게 지급하는 국가지원금
3. 이전사업 또는 지원사업을 위한 용역비 등 사업비
4. 사업 홍보비
5.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6. 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7. 그 밖에 시장이 군 공항 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종전부지개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개발사업을 위한 용역비 등 사업비
2. 사업 홍보비
3.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4. 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종전부지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 계정별 담당 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 기금 계정별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 계정별 담당 사무관

③ 기금운용관, 분임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4항에 따른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기금 운용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항건설단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당연직 위원 : 후적지개발단장, 도시주택국장, 예산담당관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는 자
 - 가. 공항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나.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관리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회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하 “통합신공항” 이라 한다)이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구 군 공항(이하 “군 공항” 이라 한다)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지정·고시된 대구국제공항을 이전하여 건설되는 공항을 말한다.
2.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이란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이하 “군 공항 이전사업” 이라 한다)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
 - 나. 공항개발에 따라 필요한 접근교통수단 등 기반시설의 건설, 공항이용객 및 항공관련업무 종사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항공화물유통시설·정보통신시설 등 공항의 업무와 관련된 시설의 조성
 - 다. 항공 관련 업무 종사자와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라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 등을 위한 주거시설과 이에 수반한 생활 편의시설 등의 조성
3. “중전부지” 란 군 공항과 대구국제공항이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부지를 말한다.
4. “중전부지 주변지역” 이란 중전부지와 맞닿은 지역으로서 중전부지 개발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5. “중전부지 개발사업” 이란 중전부지를 활용하여 관광·상업 시설을 설치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중전부지 지방자치단체” 란 군 공항 및 대구국제공항이 위치한 대구광역시를 말한다.
7. “통합신공항 이전주변지역” (이하 “이전주변지역” 이라 한다)이란 통합신공항이 건설되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및 경상북도 의성군 지역을 말한다.
8.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이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국방부장관과 중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8조(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자) ①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군 공항 이전사업은 중

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고,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군 공항 이전사업을 대행할 사업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다만, 국가는 제5조제4항의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비율의 합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

제20조(정부의 재정 지원) ① 국가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국유재산법」 제55조 및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규모·절차 및 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